

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 번호	2361
-----------	------

남궁역 의원 (국민의힘, 동대문3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도시공원, 하천변 등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용시 보행로 오염, 강우시 미끄러움, 이물질에 의한 상해, 동절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 걷기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4조제2항3항)하였으며, 지원사업시 유지·보수,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제3호, 제4호)하였습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